

300-1-084. 신문조서(呂運亨Ⅱ 大正8년 및 치안유지법 위반)**■ 呂運亨의 신문조서(Ⅱ) 수록**

- 1929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7회 걸친 담당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다.
- 呂運亨의 1919년 制令7號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범죄사실(독립운동)은 前書 卷 83에서 記述한 바와 같거니와, 本書에서는 검찰송치 후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의 一問一答式 사실 확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事件送致는 1929년 7월 29일 경기도경에서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게 있었고, 中堅俊助 검사가 담당했었다. 1회 신문조사는 1929년 7월 29일 실시되었고, 2회는 8월 1일, 3회는 8월 2일, 4회는 8월 3일에 실시되었다. 이때 證人신문은 林元根·趙東祐 등에게 실시되었다. 5회 신문조사는 8월 5일, 6회는 8월 6일, 7회는 8월 8일에 실시되었다.
- 신문조사 내용은 呂運亨의 활동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독립운동의 각 내용을 문답식으로 확인하며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신문, 취학사항, 上海·蘇聯 등지에서의 活動, 공산당 관계, 민단 관계, 임시정부 관계 등 다양하다.